

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(2024.3.6.)

조례안 입반의안



거 창 군 의 회 (총무위원회)

목 차

1	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[재 무 과]	1
2	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	[경제기업과]	4
3	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	[문화관광과]	8
4	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	[재 무 과]	12
5	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계획 동의안	[경제기업과]	20

의안번호 제2024 - 19호

_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 _ **심 사 보 고 서** _

2024. 3. 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2. 16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20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
(2024. 3. 4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: 재무과장 이동복]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함(안 제2조·제5조·제7조·제9조)
 - 가)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
 - 나)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
 - 다)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
 - 라)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
- 2) 인용법령 개정, 약칭표현에 따른 용어 정비함(안 제4조·제6조)

- 3) 감면기한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사항 삭제함(안 제9조의2·별표)
- 4)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함(안 제10조) 가)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: 300원 ⇒ 500원
 - 나)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: 600원 ⇒ 1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혜진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▲시각장애인 소유 차량 ▲농공단지 대체입주자 ▲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<u>감면 기한을</u>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
- ○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<u>전자송달 및 자동</u> 이체 시 **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**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5조, 제7조, 제9조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"300원"을 "500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600원"을 "1,000원"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"문화재"를 "문화유산 등"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삭제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면에 대한 적용례) 제5조,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의안번호 제2024 - 20호

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3. 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2. 16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20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
(2024. 3. 4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경제기업과장 이정희]

가. 제안이유

○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, 기능 및 시설을 정함(안 제2조·제3조)
 - 1) 기능: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, 근로자와 군민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등
 - 2) 시설: 문화 및 체육, 편의, 회의 및 교육, 사무 등을 위한 시설
- 휴관일, 이용신청, 이용의 제한을 정함(안 제4조~제6조)

- 이용료 및 감면, 반환을 정함(안 제7조·제8조)
- 위탁을 정함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혜진)

-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<u>'2022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'</u> <u>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,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</u>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은 4월, 복합문화시설은 12월에 준공 예정임.
- 문화, 체육, 편의, 회의 및 교육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<u>복합</u>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
-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은 없으며 조문 내용이 적합 하게 구성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)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산업단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·제8조에 따라 지정·개발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)에서 일하는 근로자(이하"근로자"라 한다)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3조(기능 및 시설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 - 2. 근로자와 거창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
 - 3. 그 밖에 근로자와 군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
 - ② 센터는 문화 및 체육, 편의, 회의 및 교육, 사무 등을 위한 시설로 구성한다.
- 제4조(휴관일)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.
 -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
 - 2.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5조(이용신청 등)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.

- 제6조(이용의 제한 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상행위 등 센터의 목적 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
 - 4.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- 5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 - 6.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
- 제7조(이용료 및 감면)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무인세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8조(이용료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
 - 1.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: 전부
 - 2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: 전부
 - 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
 - 가. 이용 예정일 그날: 100분의 50
 - 나.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: 전부
- 제9조(위탁)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관리·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안번호 제2024 - 21호

_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_ _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_ **심 사 보 고 서**

2024. 3. 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2. 16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20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
(2024. 3. 4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임양희]

가. 제안이유

○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의 제정(시행 2024. 5. 17.)으로 '문화재'라는 명칭을 '유산'으로 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'문화재' 관련 용어를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가. '문화재'용어 및 인용법명을 변경함(안 제1조~제9조)

- 1) 문화재 ⇒ 문화유산
- 2) 「문화재보호법」 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나. '문화재청'을 '국가유산청'으로 변경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혜진)

-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 등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<u>「국가유산기본법」(법률 제19409호, 2023.5.16.)이 제정되어</u> 2024. 5. 17. 시행됨에 따라
- 관련되는 <u>조례를 일괄 개정</u>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,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으로 생각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-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.

거창군 조례 제 호

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「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2호 중 "문화재보존"을 "문화유산보존"으로 한다.

제2조(「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문화재"를 "문화유산"으로 한다.

제3조(「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문화재"를 "문화유산"으로 한다.

제4조(「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단서 중 "문화재"를 "문화유산"으로 각각 한다.

제5조(「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향토문화 유적 보호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문화재적"을 "문화유산적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,「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」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"로 "문화재"를 "문화유산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문화재"를 "문화유산"으로 한다.

제6조(「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「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"를 "「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 "로 한다.

제1조, 제2조제1호, 제4조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6호, 제8조제2호, 제14조제1항 중 "무형문화재"를 "무형유산"으로 한다.

제7조(「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재난관리 주관기관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 재난수습 주관부서(제3조제3항 관련)

재난관리 주관기관	재난 및 사고의 유형	주관부서
국가유산청	가. <u>문화유산</u> 시설 사고	문화관광과

제8조(「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제4호 중 "문화재"를 "문화유산"으로 한다.

제9조(「거창군 계획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위원회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"로 한다.

제56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의안번호 제2024 - 23호

-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- **심 사 보 고 서** —

2024. 3. 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2. 16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20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
(2024. 3. 4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: 재무과장 이동복]

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

1. 제안이유

○ 인구유입 정책 실효성과 창업농 재배역량 향상, 농업경영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통·생활환경·교육·문화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

2. 주요내용

가. 취득개요

O 사 업 명: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

○ 위 치 : 거창읍 대평리 910-1번지 일위

○ 사업기간 : 2024. 5. ~ 2025. 6.

○ 취득면적 : 55필지, 56,182㎡

- 사 업 비 : 29,000백만원(국 14,000, 도 1,200, 군 13,800) (부지기반조성 2,500, 온실신축 11,550, 에너지시설설치 5,950, 용역비 100, 토지매입비 8,900)
- 사업내용 : 토지조성 5.6ha, 온실신축 4ha, 에너지시설설치
 - 토지 기반조성 : 성토, 용수, 전기, 도로구축 등
 - 온실신축: 1ha 연동형 비닐온실 4개소, 시험동 및 관리동 1개소
 - 에너지시설설치 : 농업용 지열, 공기열 히트펌프 등
- 나. 취득재산 세부내역 : 55필지, 56,182m² / 첨부1 참조

다. 추진경과

- 토지소유자 사전 협의 : 2023. 9. ~ 10.
- 취득재산 감정평가 : 2024. 1.

라. 향후계획

- 추경예산 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 : 2024. 4.
- 토지보상협의 매수 : 2024. 5.

마. 기대효과

-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과 청년인구 유입, 지역 발전 방안
-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제1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

4. 위치도 및 현황사진 : 책자 참조

② 거창韓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청년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

1. 제안이유

○ 청년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 경감을 위한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으로 청년층 인구 유입 및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

2. 주요내용

가. 취득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
○ 건축규모: 10호(호당 40m²내외) / 가조 7호, 웅양 3호

- 면적 : 400m²정도(가조 280m², 웅양 120m²)

○ 위 치:2필지

- 가조면 기리 535-1(기리창조적 체험휴양마을, 구. 석강초)

- 웅양면 한기리 915(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, 구. 하성초)

○ 사 업 비 : 1,200백만원(지방소멸대응기금 1,200)

O 주요기능 : 청년 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

나. 취득재산 세부내역

(단위:m², 천원)

구분	재산 종별	재 산 의 표 시					ᄉᄘ	コスコロ	취득	취득	재 산
		소	재	지	용도	면 적	수량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소유차
계						400		1,200,000			
^{취득} (신 축)	7. 0	가조면 기리 5	535-1	주택 (숙소) 280	280	7개동	840,000 (동당 120,000)	2024	거창韓 청년 귀농홈	コシュ	
	건물	웅양면	한기리	닉 915	주택 (숙소)	120	3개동	360,000 (동당 120,000)	2024	지원사업	거창군

※ 사업대상지 2개소는 기존 군유지 활용

다. 추진경과

O 2023. 11. :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선정

○ 2024. 1.: 사업대상부지 선정

라. 향후계획

- 2024. 2. ~ 3. :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
- **○** 2024. 3. ~ 5. : 실시설계 추진
- O 2024. 5. ~ 12. : 착공 및 준공

마. 기대효과

○ 청년 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와 연계 추진하여 청년 귀농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제1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

4. 위치도 및 현황사진 : 첨부 참조

③ 상동 도시재생사업(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) 변경

1. 제안이유

○ '20년 국토부 공모선정 "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"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「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」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재생 시설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취득개요

- 위 치: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5-3번지
- O 사업기간: 2021. ~ 2024.

○ 사 업 비 : 600백만원(토지, 지장물, 이주비 포함)

○ 취득면적 : 313m²(토지편입면적)

○ 사업내용 :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(주차장 및 공원)

나. 취득재산세부내역

(단위:m², 천원)

구분	재산	재 산 소		느 재 지		0 E 7101	기준가격	TH 71.704	ш¬
	종별	소재지	지목	지적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(공시지가)	평가금액	비고
취득	토지	상림리 95-3	대	313	313	제2종 일반	207,832 (664)	408,465 (1,305)	
	건물	상림리 95-3	주택	109	109	주거지역	170,000	_	

※ 토지평가금액: 2021년 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감정평가금액 적용

※ 공시가격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건물 산정금액 적용

다.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(사업면적 874m² → 1,187m²(313증))

	7H A F		재	산 의	표 시		コスルカ	치ㄷ		
구분	재산 종별	소	재	지	지 목	면 적 (㎡)	기준가격 (천원)	취득 시기	취득 사유	비고
총계						1,187 /286				
기존	토지/ 건물		소계			874/ 177				
	토지		·읍 상 6-1번		대	271	353,655	'21년 4월말		취득
기존		토지	토지 거창읍 상림리 92번지	대	553	222,693		생활 SOC 확충 및 주민 공동체	거창군	
기는			·읍 상 5-1번		대	50	19,900		공간 조성	거창군
	건물		·읍 상 6-1번		경로당	177	108,064			거창군
변경 (추)	토지	트지 거창읍 상림리	대	313	207,832	'24년 5월경		취득		
	건물	95-3		주택	109		170,000			

라. 추진경과

○ 2020. 12. :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

○ 2021. 6. :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

○ 2022. 12. : 어울림센터 착공

○ 2023. 12. : 토지소유자 보상 요청

O 2024. 1.: 감정평가 의뢰

마. 향후계획

○ 2024. 4. ~ 5. : 제1회 추경예산 확보 및 협의보상 완료

○ 2024. 5. ~ 6. : 건축물 철거 시행

바. 기대효과

○ 어울림센터 부지 확장으로 경관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제1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조, 시행규칙 제7조
- 4.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: 첨부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

 ○ 현 정부는 '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'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고, '스마트팜'을 통해 청년을 농업·농촌으로 유입하고자 오는 '27년 까지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임. ○ 해당 토지는 우리군이 '24~'26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<u>공모사업에 필요</u>한 부지로써, 고령화, 인력부족,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.

② 거창韓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청년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

- 청년 귀농인을 위한 <u>임시거주 시설 10개동</u>(가조면 7개동, 웅 양면 3개동)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생활비와 운영자금, 농지와 시설확보 등 <u>초기 자금 부족에 어려</u> 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, 정착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.

③ 상동 도시재생사업(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) 변경

- 거창읍 상림리 95-3번지 토지와 건물은 현재 신축 중인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바로 앞에 위치하여 건물의 시야를 가리고, 차량진입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
- <u>진입로를 확보하고 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를</u> 높이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-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의안번호 제2024 - 26호

_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_ _ 특별지원계획 동의안 - <mark>심 사 보 고 서</mark>

2024. 3. 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2. 26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27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(2024, 3, 4,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경제기업과장 이정희]

가. 제안이유

-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(주)가 투자하는 회사로 거창공장에서 즉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 증 대 및 거창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
- 대기업이 투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승강기고·대학생의 거창에서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지
- 기존 승강기업체와 에스컬레이터 부품·설치·물류업체와의 시너지 효과 등이 예상되므로 투자기업에 특별지원 필요

나. 주요내용

- 1) 지원대상
 -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(K-Escalator(가칭))
- 2) 투자계획 : 투자금액 58.6억 원(매입 44.6억 원 + 신설 14억 원)

투자 예정 금액	연간생산량	연간고용인원
 대륜엘리스 매입: 44.6억 원 토지 9.9 건물 34 기계 등 0.7 신설 설비 투자: 14억 원 	• 연 300대(월 25대) - 7천만 원 × 300대 = 210억	• 고용인원 : 12명 - 임원 1, 제조 5, 판관 4, 연구 2

- 감정평가결과(평가기관: ㈜나무감정평가법인)
 - ① 대륜엘리스 매입에 대한 평가결과

(단위 : 원)

구 분	평가액	취득가액	면적 또는 수량	취두기액의 차이
4종류	<mark>4,463,863,740</mark>	5,464,400,632		
토 지	989,694,900	972,611,000	8,046 m²	1.8%
건 물	3,402,438,840	4,339,978,636	3,674m²	-21.6%
기계기구*	63,030,000	140,690,995	3식	-55.2%
비 품**	8,700,000	11,120,001	6식	-21.8%

*기계부품 3식 : 천정코레인(호이스트),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 / 엘리베이터는 건물가액 포함

**비품 6식 : TV, 냉장고, 워시타워, 공기청정기, 침대, 사무용 가구

② 에스컬레이터 조립 Line 구축 및 옥외 Test tower 신설

(단위: 원)

구	분	공장설비투자액	수량	비고
2종	5류	1,400,000,000		
기계	기구	1,200,000,000	크레인 5억, 용접라인 4억, 조립라인 1억, 옥외Test tower 2억	
비	품	200,000,000	지게차 1억, 사무기구 02억, 컴퓨터 등 02억, 공조시설 외 0.6	

3) 지원계획

○ 지원내용 : <u>거창공장 매입 금액 44.6억 원 지원(감정평가액)</u>

○ 지원시기: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의회 의결 이후

○ 지원방법: 군의회 동의를 받아 결정

4) 사후관리

○ 입지보조금 : 부동산 부기등기 및 이행보증증권발행

○ 설비보조금 : 기계장비 관리번호 부여 및 라벨 부착

"사후관리기간"이란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 **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**를 말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혜진)

○ K-Escalator는 현재 설립 예정인 회사로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자본금 등 기업 정보가 없어 성장성을 가늠하기 어렵긴 하나, 기업 유치 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지, 승강기 밸리의 시너지 효과, 거창군 세수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되

○ 향후 <u>명백한 투자의향 확보</u>와 보조금 지급 후 <u>철저한 사후관</u>리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